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고 체육시설업에 잠수풀장업 추가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34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고 체육시설업에 잠수풀장업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2024. 12. 18.
3. 회 부 일: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신고 체육시설업에 잠수풀장업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 점검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 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u>인공 암벽장업</u>	2. ----- ----- ----- ----- ----- ----- ----- <u>인공 암벽장업, 잠수풀장업</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국내 수중레저활동 인구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을 포함하여 약 129만명 규모('21년)로 추정되고, 전국 약 50개소('23년)의 실내 수중레저 교육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¹⁾
 - 그런데 잠수풀장업이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 및 이용자 보호상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3년 3월 기준 53개소의 잠수풀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18개소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14개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종합체육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 내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그 외 21개소는 구체적인 관리·감독 형태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임.²⁾

[잠수풀장 운영 현황]

등록 수중레저사업자 (해수부 소관)	공공체육시설·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내 설치 (문체부 소관)	기타 (서비스업 등)	계
18개소	14개소	21개소	53개소

주) 2023년 3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해양수산부,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2023

2) 주로 대학스포츠센터 잠수풀, 잠수센터, 호텔 수영장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수중레저사업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등 정기점검,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시설 기준 관련 규정이 없고, 수영장업 등(종합체육시설업 포함)의 경우 시설 기준, 시설 안전 점검,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영장 내 잠수풀장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이 없음.

[수중레저사업 및 수영장업 등 관련 규제]

구분	수중레저사업	수영장업 등 (종합체육시설업 포함)
근거 규정	「수중레저법」	「체육시설법」
업소 수	총 1,624개소 ('24년 기준) : 교육업 880*, 임대업 477, 운송업 267 (*실내 다이빙풀 업체 18)	총 1,120개소 ('23년 기준) : 수영장 810, 종합체육시설 310
신고·등록	지방해양수산청 등록 (법 제15조)	지자체 신고 (법 제10조①제2호)
시설 기준	-	수심 0.9~2.7m 이하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시설 점검	수중레저기구·장비·시설물 등 연 1회 정기점검 (법 제10조)	체육시설 관련 연 2회, 반기별 안전점검 (법 제4조의3)
지도자 (교육자)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교육자 배치 (*25. 4. 23. 시행) + 교육업은 사업장·수중레저기구에 활동자 5명당 교육자 1명 이상 배치 (법 제11조①제5·6호, 시행규칙 제6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체육지도자 1~2명 배치 (400㎡ 이하: 1명/ 400㎡ 초과: 2명)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안전관리자	-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안전교육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2년 주기 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3조)	체육시설 소유자·관리자·체육시설업자 등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법 제4조의8, 시행규칙 제1조의4)
교육단체	해수부장관 인정단체 47개소 (*24. 9월 해수부 공고 제2024-1002호)	-
기타	이용요금 게시(제19조), 기구 정원 등 준수 의무(제21조) 등	이용료 반환 등 준수 사항(법 제22조), 보험가입(법 제26조) 등

- 이를 고려할 때, 수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바, 잠수풀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중레저사업의 특성, 관련 현행 규정 등 아래와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중레저법」과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수풀장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할 경우, 해수부장관 인정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한 교육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과 별개로 「체육시설법」상 ‘체육지도자’³⁾ 및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는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혼란 및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한편, 잠수풀장업 관련 사항이 「수중레저법」에 규율되더라도,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 등으로 신고한 수영장⁴⁾ 내 잠수풀장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체육지도자 종목은 수중(전문스포츠지도사), 스킨스쿠버(생활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에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수중레저법」 제3조에 따라⁵⁾
「수중레저법」상 규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바, 이 경우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음.

- 덧붙여, 현재 수중레저사업 또는 수영장업 등 어느 유형으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타 잠수풀장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조속히 파악함으로써, 안전관리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잠수풀장을 관리 범위에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음.

○ 문체부는 「수중레저법」의 개정을 통해 수중레저사업자가
잠수풀장업(단독 잠수풀장의 경우)을 등록하도록 하되, 수영장 등
내 잠수풀장의 경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수중레저법」상 안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⁶⁾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문체부 개정안)

현행 규정
「체육시설법」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해수부는 현행 「수중레저법」은 사업자의 활동(임대업·운송업·교육업)을 규율함에 따라 시설기준이 전무하므로, 단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법」상 신고업으로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⁷⁾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도 실내 잠수풀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현행 시행규칙	문체부 개정(안)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1) ~ (10) (생 략) (11) ~ (13) (신 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1) ~ (10) (현행과 같음) (11) <u>잠수풀장(다이빙장)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중안전요원(「수중레저법」에 따른 수중레저교육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수중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u> (12) <u>잠수풀장 수영조의 욕수 수질기준, 수질검사방법 등은 수영조 욕수의 기준에 따른다.</u> (13) <u>기타 수중안전요원 배치 기준, 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대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교육 등은 「수중레저법」에 따른다.</u>

7) 참고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한국스키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대한승마경영자협회, 대한당구장협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대한안전연합,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사)한국산업잠수협회장,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대한잠수협회, 한국레저안전협회 등에 의견조회하였으나 미제출.

[제21대 국회 실내 잠수풀장 안전관리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및 검토보고	심사경과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462)	이병훈의원 (23.3.7.)	<주요내용> ○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제2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 문체부와 해수부 등 부처 간 협의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문체위) -상정(23.5.17.) -임기만료폐기
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458)	이병훈의원 (23.3.7.)	<주요내용> ○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11조제1항6호)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안 제11조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프리다이빙 강습이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이 적합한지 또는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교육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농해위) -상정(23.4.11.) -임기만료폐기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체육시설업 현황

○ 체육시설업 유형

등록업	신고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17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체육도장업(7종) :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6조 [별표2], 시행규칙 제6조)

○ 체 육시 설 업 연 혁

법률	등록업	신고업	계
제4106호 1989.3.31.	9종	40종	49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육체미·우슈·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 볼링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	
제4719호 1994.1.7.	9종	16종	25종
	*경륜장업, 합기도·육체미·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 정구장업, 미용체조장업 제외 **자동차경주장업, 테니스장업, 썰매장업, 에어로빅장업 추가		
제5636호 1999. 1.18.	9종	14종	23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제외		
제7629호 2005. 7.29.	3종	22종	25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추가		
제7913호 2006. 3.24.	3종	19종	22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제외		
제15767호 2018. 9.18.	3종	22종	25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합기도 추가		
제17267호 2020. 5.19.	3종	23종	26종
	*체육교습업 추가		
제17591호 2020. 12.8.	3종	24종	27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인공암벽장업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규제 관련 근거 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참고자료2] 수중레저사업 관련 참고자료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현황 (해수부 고시 기준 47개소('24.9월))

지정 연도	단체명
2017년 (32개소)	세계스킨스쿠버연맹, (사)한국잠수협회, SDD Internataional, PSAI KOREA, NAPD, NASDS KOREA, ANDI International KOREA, IANTD, NDL KOREA,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SSI KOREA, BSAC KOREA, (사)한국산업잠수협회, SDI.TDI.ERDI, NAUI, UTR KOREA, NASE KOREA, UTD KOREA, IDIC, IDEA-ASIA, PDIC-SEI ASIA, 국제잠수안전협회, YMCA SCUBA,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 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 PADI,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AFIA, ACUC, 국제잠수교육협회(ISEA), (사)대한안전연합, (주)산업잠수협동조합
2019년 (1개소)	AIDA KOREA
2020년 (2개소)	(사)한국레저안전협회, PTRD KOREA
2022년 (4개소)	Global Underwater Explorers, 몰차노브 프리다이빙코리아, ASTD, UTA
2023년 (4개소)	에이피디아아이(APDI), PSS, (사)한국스포츠레저교육협회, 한국프리다이빙협회(KFA)
2024년 (4개소)	공공재난안전구조협회, 국제레저스포츠교육원(ILEC), 더블케이 국제 프리다이빙 협회, MFI

○ 「수중레저교육 표준」 (해수부, '17.5월 제정)

등급	교육 표준	
초급	이론	○ 수중레저장비 이용 관련 초급지식 ○ 압력균형, 압력의 영향 및 부력조절방법 등을 포함한 수중레저물리학 기초내용 ○ 압력, 스트레스, 수온의 영향 등 수중레저 상해 관련 일반지식 ○ 수중레저 환경·조건에 대한 초급지식 ○ 그룹 이탈 등 위기상황 시 행동 요령
	실습	○ 물안경, 오리발, 숨대롱 등 수중레저장비 및 비상호흡장비 사용방법 ○ 수중레저장비 결합 및 해체, 입수 및 출수(하강 및 상승 포함) ○ 수면수영 시 스노클 및 호흡기 교환 또는 수면 호흡 ○ 유영 또는 수평 잠영, 부력조절, 기본 수신호, 계기 확인방법 ○ 장비관리방법, 장비 물빼기, 호흡기 찾기, 웨이트장치 제거 등
중급	이론	○ 수중레저장비 이용 및 수중레저 환경·조건에 대한 중급지식 ○ 소리, 빛, 부력, 압력, 온도 등을 포함한 수중레저 물리학 내용 ○ 잠수표, 다이브 컴퓨터 등을 활용한 감압관리(압력) 관련 기초내용 ○ 수중레저활동 계획 수립 관련 일반 지식 ○ 압력, 스트레스, 수온의 영향, 호흡 등 수중레저 상해 관련 중급지식 및 상해 발생 시 응급처치 내용
	실습	○ 웨이트장치 무게 조절 ○ 동행 활동자 확인, 근거리 유지 등 동행 활동자 관련 사항 ○ 장비 착용 후 수면 스노클링 수영 ○ 공기 고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상급	이론	○ 수중레저 관련 법령 지식, 수중 및 수면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 야간, 제한된 시야, 표류, 심해, 침몰선, 드라이슈트 등 상급 상황에서의 수중레저활동 방법 및 주의사항 ○ 수면까지의 수직 상승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요령 ○ 사고처리 및 실종 활동자 발생 및 조류, 해류 등 수중환경의 변화 대응요령 ○ 숙련된 수중방향찾기 등
	실습	○ 해류 발생, 수온 변화 등 수중레저활동 중 변수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기본 기술 ○ 중급 교육 실습항목의 심화내용을 기본으로 수면표시 부이(부표) 이용 추가 실습 ○ 수중레저활동 계획 및 실행 관련 기술 ○ 타 수중레저활동자 안내 ○ 수중레저활동자 구조 기술 ○ 응급처치기술 등 숙련된 응급상황 대응 등
지도자	이론	○ 초·중·상급 교육 항목의 심화내용 및 교육 시 필요 사항 ○ 수중레저활동 관련 의학적·심리적 주의사항에 대한 일반지식 ○ 수중레저 관련 기관에 대한 일반지식 ○ 수중레저활동자 보호 의무, 초·중·상급 활동자 교육 및 평가 기술 ○ 항해보조장비를 이용한 수중레저활동구역 선정 등
	실습	○ 초·중·상급 교육과정의 실습 교육내용 시연 ○ 초·중·상급 이론 교육 과정의 계획·수행 ○ 초·중·상급 교육과정 평가관련 사항 ○ 수중레저활동자 구조 기술 ○ 응급처치기술 등 숙련된 응급상황 대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수중레저사업 규제 관련 근거 조문

「수중레저법」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0. 22.>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소방관서·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 의무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4.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을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장비 대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2. 하강사다리의 설치 상태

3. 탐조등의 작동 상태
4. 구명부환의 파손 여부
5. 경적의 작동 상태
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 상태
7. 구명줄 보관 상태

② 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7조(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수중레저교육자는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